

#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 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170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<sup>1)</sup>\* 도입에 따라,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하남시 주민투표 조례」 및 「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의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
  - ‘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변경(안 제1조)
  -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변경(안 제2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 : 생략

1) (근거법령)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법무담당관**

##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 정비조례안

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하남시 주민투표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등록번호”을 “생년월일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부서명	기획예산담당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김정기
	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팀장 박상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윤라 (790-5520)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 제1조(하남시 주민투표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 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·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 ·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 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----- ----- ----- <u>생년월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 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·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·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, 청구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 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생년월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## 제2조(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· 징수에 관한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법행위 신고) ① · ② · ③ (생략)</p> <p>1. 신고인의 성명 · <u>주민등록번호</u> · 주소 · 직업 및 전화번호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10조(위법행위 신고) ① ·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성명 · <u>생년월일</u> · 주소 · 직업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<개정 2016.3.29., 2017.7.26.>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 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3.24., 2015.7.24.>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4.>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4., 2017.7.26.>